

국제교류원 운영규정

공포 제2026- 3호(개정 2026. 7. 24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 원은 장안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부속 국제교류원(이하 “본 원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 (개정 2025.9.25.)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국제교류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직무) 본 원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적극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, 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 및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
2. 국내·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협력
3.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
4.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홍보 및 지원
5. 학생 및 교직원의 국제 관련 활동 자문
6. <삭제 2025.9.25.>
7.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
8.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및 해외 캠퍼스 설립
9. 해외 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과의 학점 교류 업무
10. 그 밖에 본 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
제4조(직무의 위탁)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구성) 본 원은 총장 직속기구로 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. (개정 2025.9.25.)

1. 원장
2. 부원장
3. 운영위원회
4. 그 밖에 필요한 부서

제6조(원장) ① 원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- ②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원장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본 원 운영의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 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국제교류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지원처장을 당 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이 된다.(개정 2025.2.17.)
-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(개정 2025.2.17.)
-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

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, 회의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-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 다만, 제5호는 자문에 한한다.
 1. 본 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 2. 본 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결과
 3. 본 원의 예산 및 결산
 4. 본 원의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
 5.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
 6.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과 홍보비 지급
 7. 그 밖의 본 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한국어 연수과정<삭제 2025.9.25.>

제8조 <삭제 2025.9.25.>

제9조 <삭제 2025.9.25.>

제10조 <삭제 2025.9.25.>

제11조 <삭제 2025.9.25.>

제12조 <삭제 2025.9.25.>

제13조 <삭제 2025.9.25.>

제14조 <삭제 2025.9.25.>

제4장 재정 및 회계

제15조(회계) ①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본 원의 회계업무는 장안대학교 ‘재무·회계 업무규정’에 따른다.

제16조(예산 및 결산) ①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전까지 다음 학년도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학기별 입학 인원 예측이 어렵거나 변동이 클 경우, 입학 기수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③ 원장은 매 학년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7조 <삭제 2025.9.25.>

제18조(홍보비) ① 상기 제 4조에 따라 위탁업체에 대한 홍보비를 지급한다.

② <삭제 2025.9.25.>

제19조(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
1. 외국인 유학생 홍보,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

2. 그 밖에 본 원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추진비 및 경비

제5장 기타

제20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제규정, 출입국관리법,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.

제21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이 공포됨과 동시에 국제교류센터 운영규정은 폐지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본 대학교 국제교류원 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어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며,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「장안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규정」에 따른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